

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-81호

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5월 12일  
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

## 공 시 송 달 서

항만운송(관련)사업체 실태조사 결과,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체에 대해 「항만운송사업법」 제26조의5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1. 처분의 제목 : 항만운송(관련)사업 행정처분
2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: 1년간 사업 수행 실적 없음(1차 위반 및 2차 위반)
3. 처분의 당사자

사업의 종류	업체명	대 표	신고 주소
항만용역업	(주)디앤디	허수빈	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349,703호
선용품공급업	지혜산업	임지혜	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 56번길 51-1

### 4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

종 류	업체명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행정처분의 내용	법적근거
항만용역업	(주)디앤디	사업수행 실적 없음(1차 위반)	사업정지 3개월	항만운송사업법26조의5
선용품공급업	지혜산업	사업수행 실적 없음(2차 위반)	사업정지 6개월	항만운송사업법26조의5

## 5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

- 가. 의견제출은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 및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, 우리 청에 방문하여 말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의견제출서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(붙임 참조)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.
- 다. 다만, 우리청에 방문하여 구두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우리청에서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3항 별지 제13호서식에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합니다(전화 등 유선으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).
- 라.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## 6. 의견제출 방법

- 가. 의견제출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서면(방문·우편·팩스), 정보통신망으로 제출 가능하며, 우리청에 방문하여 구두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- 방문 또는 우편 :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,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
  - 팩스/정보통신망 : 054-245-1592/ seawithha@korea.kr
- 나. 우편, 팩스,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출 후 우리청에 전화로 통보하여야 합니다(054-245-1539)
- 다. 의견제출서는 당사자 등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, 당사자등이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이 선임한 대리인이나 우리 청에서 허가 받은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(신분증 지참)

## 7. 대리인에 관한 사항

- 가. 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에 따라 당사자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  - 당사자 등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형제자매
  - 당사자 등이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
  - 변호사

-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
  -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
- 나. 당사자등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,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지 제3호서식(붙임 참조)에 따라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다. 당사자등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지 제4호서식(붙임 참조)에 따라 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라. 당사자등이 대표자(대리인)을 해임(변경)하였을 때에도 「행정절차법 시행규칙」 제4조 별지 제5호서식(붙임 참조)에 따라 대리인 해임(변경)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우리청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.

## 8. 의견제출 기한 : 2026. 5. 22(금) 18:00까지

## 9. 기타사항

- 가.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의 내용대로 행정처분하게 되며, 본 공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당사자 등은 폐업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또는 휴업·회사사정 등으로 사업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신고확인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다.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경우 미리 우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라.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청 항만물류과(전화054-245-1537, 하대운 주무관)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.

- 붙임 1. 의견제출서 1부.  
 2. 대리인 선임 허가 신청서 1부.  
 3.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.  
 4. 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통지서 1부. 끝.

## 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 (전화번호: 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,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### 유의사항

-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
신청 내용	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등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 )	
	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 주소 (전화번호: )	생년월일
	당사자등과의 관계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  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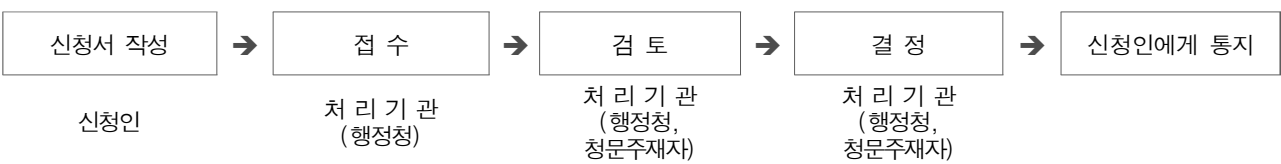
**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**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### 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처 리 절 차



※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.



[ ] 대표자 ( [ ] 해임 [ ] 변경) 통지서  
[ ] 대리인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통지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통지 내용	①대표(대리)한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 등	성명(명칭)	
		주소	
	해임(변경)된 대표자 (대리인)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	생년월일
주소		(전화번호: )	
대표자(대리인) 해임(변경) 사유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통지인

(서명 또는 인)

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변경통지의 경우에는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.
3.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